

심 사 보 고 서

○ 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

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360호
----------	-------

2016. 5. 4.(수)
정책복지 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6년 4월 18일
- 회부일자 : 2016년 4월 19일

다. 상정일자 : 2016년 4월 27일

-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서승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2016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① 출연 목적

-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

대한 경영지도, 경영자문 및 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함

② 출연 예정액 : 60,000천원(도비 100%)

- 17개 시·도 출연금 총액 : 1,014백만원
- 배분기준 : 재정력 지수(50%) 및 평가대상 공기업 수(50%)
 - 시·도 재정력 지수 및 시도평가 기초공기업 수(1~4구간)를 설정
 - 단,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·규모를 감안하여 0.5구간 설정

③ 출연계획 (단년·반복사업)

(단위: 천원)

구분 (기준보조율)	2015년			2016년 (C)	증감 (D=C-A)
	계(A+B)	당초(A)	추경(B)		
도비(100%)	0	0	0	60,000	60,000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‘지방공기업평가원’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1992. 3월 설립·운영되고 있으며, 1999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자체의 출연·보조 없이 연구용역 등 자체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.

※ 충북도 1992~1998년 출연 규모 : 490백만원

- 지난 2015년 7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정책수립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연구 및 전문기관으로 개편하고자 ‘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’을 수립하면서 안정적 개정기반 확충을 위해 17개 지자체의 출연을 결정함.

※ 11개 시·도 : ‘16 당초예산 확보, 6개 시·도 추경 확보 예정

- 금번 제출된 「2016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」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16년도 제2회 추경 반영을 위해 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 지자체의 출연을 통해 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구조 마련 및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아울러, 충북도에서는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시도 지원사업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,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짐

< 참고자료 >

◆ 2016년도 시도별 배분금액 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시·도별	출연 금액 (A+B)	분담 비율	재정력 지수			기초공기업수		
			지수	구간	금액(A)	수	구간	금액(B)
합 계	1,014	100.0%	11.090	-	516	275	-	498
서울특별시	78	7.7%	1.030	4	42	24	3	36
부산광역시	60	5.9%	0.751	3	36	1	1	24
대구광역시	54	5.3%	0.646	2	30	-	1	24
인천광역시	60	5.9%	0.824	3	36	7	1	24
광주광역시	54	5.3%	0.667	2	30	-	1	24
대전광역시	54	5.3%	0.685	2	30	-	1	24
울산광역시	66	6.5%	0.939	4	42	3	1	24
세종특별자치시	36	3.6%	0.496	0.5	18	-	0.5	18
경기도	84	8.4%	0.921	4	42	88	4	42
강원도	60	5.9%	0.398	1	24	24	3	36
충청북도	60	5.9%	0.529	2	30	18	2	30
충청남도	66	6.5%	0.607	2	30	21	3	36
전라북도	54	5.3%	0.484	1	24	15	2	30
전라남도	54	5.3%	0.433	1	24	16	2	30
경상북도	72	7.1%	0.502	2	30	31	4	42
경상남도	66	6.5%	0.678	2	30	27	3	36
제주특별자치도	36	3.6%	0.500	0.5	18	-	0.5	18

◆ 시도 지원사업 (17개 시도 출연금 1,014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지원사업명	산출기초	지원예산
계	4개 사업		1,566+ α
1	지방공기업 정책개발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연구과제 10개과제×80=800 • 정책연구과제 5개과제×50=250 • 수시연구과제 10개과제×15=150 ※ 매년 11월말까지 시도로부터 연구과제를 신청받아 필요로 하는 맞춤형 연구 	1,200
2	지방공기업 정책세미나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 및 지방공기업 포럼 (20×3회=60) • 지방공기업학회 학술대회 16 	76
3	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령·통계집 발간·배포(2종) 10 • 해외공기업 자료 수집·DB 제공 10×2회=20 •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발굴·보급 10 •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지 발간·보급(2회) 100 • 각종 상담 등 무료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경영컨설팅 상담·자문 - 시도산하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 지원 (평가위원) - 시도 지방공기업 CEO 평가 지원(평가위원) 	140
4	출자출연기관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출자·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표준안 개발 	150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2016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」 1부

1 출자·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예산담당관실 공기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신재식	서정호	장현호	220-2242

기관명	지방공기업평가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 : 김형선 (*재단법인)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길 7층(공덕동) - 인 력 : 32명(이사장1, 상임이사1, 전문위원 16, 행정지원직 14) - 주요사업 : 지방공기업 경영지도, 자문, 사업타당성, 정책연구·교육 등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출연 예정금액 : 60,000천원(도비 60,000천원) 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: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rowspan="2">사업기간</th> <th rowspan="2">2016년 요구액*</th> <th colspan="5">재원별</th> </tr> <tr> <th>계</th> <th>국비</th> <th>시비</th> <th>시군비</th> <th>기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계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인건비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.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주요 사업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5.0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9.6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 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4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산출근거(상세내역 별도 첨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·도별 재정력 지수(50%) 및 평가대상 공기업 수(50%) 구간 설정 ○ 우리 도는 재정력 지수 0.529로 2구간, 공기업 수 18개로 2구간 위치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단위 : 백만원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시·도별</th> <th rowspan="2">출연금액 (A+B)</th> <th rowspan="2">분담 비율</th> <th colspan="3">재정력 지수</th> <th colspan="3">기초공기업수</th> </tr> <tr> <th>지수</th> <th>구간</th> <th>금액(A)</th> <th>수</th> <th>구간</th> <th>금액(B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충청북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.9%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.529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8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				구 분	사업기간	2016년 요구액*	재원별					계	국비	시비	시군비	기타	계		60						인건비 등	1년	15.0						주요 사업비	1년	45.0						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등	1년	39.6						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	1년	5.4						시·도별	출연금액 (A+B)	분담 비율	재정력 지수			기초공기업수			지수	구간	금액(A)	수	구간	금액(B)	충청북도	60	5.9%	0.529	2	30	18	2	30
	구 분	사업기간	2016년 요구액*	재원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계	국비	시비	시군비	기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계		6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인건비 등	1년	15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요 사업비	1년	45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등	1년	39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지방공기업 발전지원사업 등	1년	5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시·도별	출연금액 (A+B)	분담 비율	재정력 지수			기초공기업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지수	구간	금액(A)	수	구간	금액(B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충청북도	60	5.9%	0.529	2	30	18	2	3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·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평가원의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혁신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 정책연구·개발 활동 수행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연의 지급,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'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출자출연기관으로 명시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의견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서, 각 시도는 평가원 운영비, 시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※ 각 시도 별 재정규모 및 공기업 수에 따라 차등 출연 ○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·컨설팅·사업타당성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○ 특히,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·예산·결산 등은 자치단체에서 이사 4명(시도별 순번제 위촉)이 포함된 이사회(10명)에서 심의·의결하고 있어,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 가능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·출연사업계획서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-2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지방공기업평가원

설립근거	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			전화번호 : 02-3274-3353			
				홈페이지:www.erc.re.kr	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992.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- 1992.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 - 1994.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- 2000. 1 재)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- 2002.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 - 2011.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- 2016. 3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출범 		출연기관	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			
인원현황 (‘16.1월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비정규직			
	32명		32명	- 명			
임원 (‘16.1월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	
	이사장	김○○	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	2014. 1.20~2017. 1.19			
	상임이사	공○○	지방행정연수원 교육1과장	2013. 9. 1~2016. 8.31			
	당연직이사 (비상임)	5~6인	- 행자부(1) : 지방재정정책관 - 광역시·도(4-5) : 기획관리(조정)실장	당해직위 재임기간 -광역시도 윤번제 (2년임기)			
	위촉직이사 (비상임)	김○○	경기대학교 총장	2014. 4. 1~2017. 3.31			
		김○○	시군구청협의회 사무처장	2014. 4. 1~2017. 3.31			
	감사(비상임)	이○○	한국생산성본부 상무	2014. 4. 1~2017. 3.31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, 공기업의 사업타당성 검토 -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-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 						
자본금 ¹⁾ (단위:백만원)		300		출연액 (단위:백만원)	10,120 (‘92~‘98까지 출연)		
최근3년 간 예산 현황 (단위:백 만원)	연도	2014	2015	2016	재무현황 (백만원) ‘14.12.31기준	자산	17,145
		예산액 ²⁾	8,410	7,942		17,416	부채
	일반 회계	지자체 지원액 ³⁾				자본 ¹⁾	15,775
		예산액 ²⁾	11,927	7,439	-		
2015년 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	총수익		총비용		당기순이익		
	7,809		7,423		386		

1) 자본금은 자본(자산-부채)의 한 부분이며, 자본은 자본금, 자본잉여금,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

2)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
3) 해당 기관 예산액(2) 번 항목)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

1-③ 출자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예산담당관		출연	60,000천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정책연구 및 전문 지원기관으로 개편을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
- 지방공기업 정책연구, 투자타당성 심사 등 및 경영지원 사업 확대
-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실시로 경영역량 제고
- 지방공기업 각종 통계관리 등 지방공기업 발전사업 지원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지원
- 사업기간 : 2016. 1 ~ 12월
- 출연금액 : 60,000천원(도비 100%)
- 주요내용 : 지방공기업평가원 안정적 재정기반 확충
- 평가원 운영재원 구성('15년 기준)
 - ※ 자체(자본수입) 6.7% 사업(사업수입) 93.3% 출연 0%
- 출연근거 :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제3항

□ 산출기초

- 시·도별 재정력 지수(50%) 및 평가대상 공기업 수(50%) 구간 설정
- 우리 도는 재정력 지수 0.529로 2구간, 공기업 수 18개로 2구간 위치

(단위 : 백만원)

시·도별	출연금액 (A+B)	분담 비율	재정력 지수			기초공기업수			비고
			지수	구간	금액(A)	수	구간	금액(B)	
충북도	60	5.9%	0.529	2	30	18	2	30	

□ 기대효과

-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연구지원으로 건전한 발전 도모
-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
- 지방공사의 출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에 기여
-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검토를 통하여 무분별한 사업 추진 방지(예산낭비 사전 예방)
- 지방공사채 발행의 타당성검토로 효율적인 재원조달방안 제시
- 지방공기업 설립에 전문적인 타당성검토로 공기업 남설 방지
-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수 실시
-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, 보급
- 경영평가 결과 '다', '라'등급 지방공기업에 대한 무료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지방공기업혁신 방안 추진 지연
 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후 피드백 컨설팅, 경영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경영지도의 한계
 -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 부족으로 지방공기업 역량 강화 지원 애로
 -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투자 등에 대한 심층적·전문적 검토 미흡
-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일원화를 위한 평가원 장기전략 지연
- 지방공기업 발전방안 등 평가원 정책연구자료 공유 곤란 우려
 - ※ 17개 시·도중 11개 시·도 '16년 당초예산 확보, 5개 시·도 추경예산 확보 예정